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제1항제2호 규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같은법 제4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43조(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규정에 따라 과태료 독촉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4.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

1. 공고 대상(과태료재판 집행위탁)

구 분	사건번호 (납부자명)	반송주소	반송사유	위반항목	과태료 금액(원)
독촉부과	2025과1143 (서*회)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정기검사 미필)	1,545,000
독촉부과	2025과1745 (서*회)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정기검사 미필)	3,090,000

2. 공고기간 : 2026. 9. 4. ~ 9. 30.

3. 납부기한 : 2026. 9. 30.

4. 공고내용

- 가.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나. 대상자께서는 방문이나 전화 문의(☎031-940-5911)를 통해 내용 확인 후,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가산금이 부과되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에 의거 당사자의 재산 압류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031-940-5911)